

※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건설사업 기술용역 유사용역 인정범위

□ 인정기간

공 정	기본 및 실시설계	건설사업관리
당 초	최근 10년간	최근 5년간
변 경	최근 10년간	최근 10년간

□ 인정범위

공 정	기본 및 실시설계		건설사업관리	
	유사용역 인정범위	실적 가중치	유사용역 인정범위	실적 가중치
관 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경 1/3 이상 상하수도사업 • 주관경 1/3 미만 상하수도사업 * 단, 100mm 이상의 실적만 인정 	100% 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관경 1/3 이상 상하수도사업 • 주관경 1/3 미만 상하수도사업 * 단, 100mm 이상의 실적만 인정 	100% 50%
정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이상 정수장 (고도포함)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미만 정수장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이상 하수처리장 	100% 50% 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이상 정수장 (고도포함)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미만 정수장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이상 하수처리장 	100% 50% 50%
취수장 가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이상 취·가압장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미만 취·가압장 	100% 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이상 취·가압장 • 시설용량 5천 m³/일 미만 취·가압장 	100% 50%

- 주) 1. 1개 공정만 포함된 단일공정의 경우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용역 실적 가중치를 적용
 2. 2개 이상의 공정이 포함된 복합공정일 경우 각 공정별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중인 공사비 가중치 및 실적가중치를 적용

예시) 취가압장+정수장+관로 사업이 포함된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사업
 (총사업비 1,000억원 : 취가압장 300억원, 정수장 200억원, 관로 500억원)

구 분	공사비 가중치	설계·감리용역 반영비율(%)			
		인정범위	실적 가중치	인정범위	실적 가중치
취·가압장+정수장+관로	100%	3개 또는 2개시설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가중치 100% 충족시 해당시설 실적이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가중치 100% 충족시	100%	모든 시설의 실적이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가중치 50% 해당시 해당시설 실적이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가중치 50% 해당시	50%
취·가압장+정수장	50%				
취·가압장+관로	80%				
정수장+관로	70%				
취·가압장	30%				
정수장	20%				
관로	50%				

* 복합시설 반영 가중치는 1개 이상 시설이 각 시설별 기준이상 실적 충족시 100% 인정,
 모두 미충족시 50% 인정